

문서번호 : 제 2015 - /3 호

2015.02.09

수 신 : 리카온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(주) 임철상 대표 귀하
(140-820)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9-40번지 남영빌딩 5층

발 신 : 삼성화재에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
101-191 서울 중구 을지로1가42번지 부림빌딩 8층

제 목 : 손해사정보고서 內 면·부책 검토 의견 기재 요청
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時 면·부책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全 件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既 배포한 손해사정보고서 양식 中 면·부책 검토 의견 필수 기재

- 입회(현장)보고서 內 「보상책임 - 면·부책 판단 근거」 추가
- 최종보고서 內 「II.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- 1.보상책임」 中 면·부책 검토 의견 작성(판단 근거 작성 必)

□ 면·부책 판단 기준 및 대상

- 판단기준 : 보험약관 「대물배상 - 보상하지 않는 손해」 기준 적용
(면·부책 검토 제외 : 피보험자 및 운전자 개인정보 관련 특별약관 위배 사항)
- 대 상 : 보상담당자의 법률질의 결과 부책 外 全 件 대상

※ 면·부책 검토 의견 未기재된 손해사정보고서는 '15.2.16일부터 반려 조치 後 향후 평가 時 불이익 적용 예정이오니,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삼성화재에니카손사 대물전략파트장

(담당자 : 김제현 ☎ 070-7111-6899)

